

평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7
----------	-----

제출년월일 : 2000. 7.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개정사유

- 우리군 주민의 약 41%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로 생활용수 충당
 - 평창 36%, 미탄 58%, 방림 96%, 대화 45%, 봉평 25%, 용평 72%, 진부 32%, 도암 27%
- 대부분의 시설 노후 및 시설의 운영·관리미흡 등으로 양질의 물공급이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 강화, 운영 관리등의 규정 신설과 개정을 통한 운영·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기준〉

구 분	설 치 주 체	시 설 규 모	비고
간이상수도	시장·군수	- 급수인구 100-2,500인 - 시설용량 20-500톤/일 미만	
소규모급수시설	주민	- 급수인구 100인 미만 - 시설용량 20톤/일 미만 * 군수가 지정한 시설	

□ 주요내용

- 제명을 평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평창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변경
-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함(제3조)
-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 함(제6조 및 제7조)
-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함(제10조)
- 지방상수도 공급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 군수는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첨부
2. 신구조문대비표 : 첨부

평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평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3의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 당해 지역의 군수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6. “시설관리책임자”(이하 “관리인”이라 한다)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 2 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제4조(시설의 관리)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등)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 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①군수는 수도법 제19조및제38조의2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제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①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군수가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폐지 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수도법 제20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관 리 비 용

제13조(요금징수) ①군수는 간이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평창군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관리비용) ①군수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 방법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계량기) ①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군수가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제16조(요금 운영 규정) 징수된 사용료는 간이상수도와 관련되는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4 장 사용자 대표 협의회

제17조(설치)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 유지, 관리비용 분담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구성) ①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간이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 청소
2.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관리인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간이급수시설의 운전
2. 수질상태의 점검과 소독 실시
3. 평상시 급수의 상태와 급수량 점검
4. 보호시설의 관리 및 일반인 출입통제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개최)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21조(실비보상) 군수는 간이상수도 사용자대표협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교육) 군수는 간이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시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관리의 위탁) ①군수는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간이급수시설 관리대장(제4조제2항관련)

관리번호	시(군) 번호											
구분	항 목											
일반 현황	내 역											
	도 시·군 읍·면 리 마을·부락											
	협의화대표자	성 명	전화번호			() - -						
	준공년월일											
투자 현황	총투자액 (만원)	구 분	내 역	일 자	국고보조		지방비		주민부담	기 타		
		최초사업비			자계지원	현금지원	시도비	시군비				
		시설개량										
		1차										
		2차										
		3차										
		수원이전 계										
시설 현황	수원의종류	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										
	시설의유형	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										
	취수시설	보유시설	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									
		시설내역	구 분	계 원			시설상태		특기사항			
							양호	불량				
			집수정 1						심도:	m		
			집수정 2						심도:	m		
	양수모터1							마력				
	양수모터2							마력				
	정수시설	보유시설	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									
시설내역		구 분	계 원			시설상태		특기사항				
						양호	불량					
		소독설비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송배수관로	구 분	송수관로				배수관로				관종별 총연장(m)		
		관종	직경	연장	관종	직경	연장					
		소 계	mm	M		mm	M					
		소 계	mm	M		mm	M					
		소 계	mm	M		mm	M					
총 계		M			M	총계:	M					
급수 현황	제 회	급수인구:	명	급수가구:	가구	1인당1일급수량: 리터						
	현 재	급수인구:	명	급수가구:	가구	1인당1일급수량: 리터						
	제한 급수	1차:	2차:		3차:		계: 일간					
수질 검사	검사 시설	취수원	배수지	수도꼭지	검사기관	(개항목)						
	합격 여부				검사일시							
개량 내역	개량 일자	개량시설명	소요액(만원)	시공자	개 량 내 용							
수원 이전	이전 사유				이전일자			소요비용	만원			
	이전 위치											

※ 시설폐지시는 뒷면에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별지 제2호 서식]

간이급수시설 정기점검 대장

(제7조 제1항 관련)

관리번호	시(군) 제 호	점검일자 :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 취수원의 보호 · 관리상태			
○ 침전지의 운영 · 관리상태			
○ 여과지의 운영 · 관리상태			
○ 배수지의 운영 관리상태			
○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 소독시설의 운영 · 관리상태			
오염물 제거	취수원부근		
	배수지부근		
기 타			

* 매 3개월마다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본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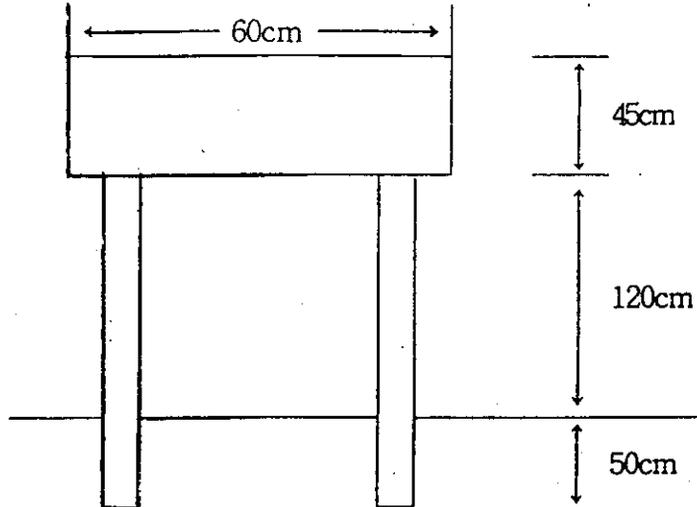
간이급수시설 수시점검 대장

(제7조 제1항 관련)

관리번호	시(군) 제 호	점검일자 :	점검자 : 소속 직 · 성명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 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유독성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			
○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			
○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			

[별표1] 간이급수시설 안내판 (제5조1항 관련)

간이급수시설 안내판



재질 및 두께 : 5mm내외의 스테인레스 재질

바탕 색 : 흰 색

글씨 : 청 색

○ 내용문

알 림

1. 이곳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또는 소규모급수시설) 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시 연락처 : ○○시·군 수도과(전화 :)

관계법령발췌서

수도법

第2條(任務)

④ 水道事業者는 水道를 計劃的으로 整備하고 水道事業을 合理的으로 經營하여야 하며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供給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23條(供給規程) 一般水道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水돗물의 料金, 給水 裝置에 관한 工事의 費用負擔, 기타 水돗물의 供給條件에 관한 規程을 정하여 水돗물 의 供給을 開始하기 전까지 認可官廳(廣域上水道의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을 말한다. 이하 第48條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언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水道事業者가 地方自治團體인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 的의 條例로 정한다.

第32條(簡易上水道)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簡易上水道의 衛生管理를 위하여 필요한 技術 및 財政支 援을 하여야 한다.
- ② 簡易上水道의 管理등에 관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수도법시행령

제3조(간이상수도의 설치) 법 제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한 수도시설”이 라 함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주민이 음용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 수를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는 침전지·여 과지·소독시설 등의 정수시설을 갖춘 수도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독시설을 제외한 정수시설로서 수질이 양호하여 그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정수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주민공람 · 공고 결과 확인서

- 공고기간 : 2000. 5. 24 ~ 6. 12 (20일간)
- 공고방법 : 군보게재 및 읍면계시판 게시 공고
- 공고내용 : 평창군간이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 공고결과
 - 평창군간이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평창군법무행정처리 규칙에 의거 입법예고(공고)하였으나 의견 제출된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붙임 : 읍 · 면 공고결과 보고 각 1부. 끝.

2000. 6.

확인자 : 도시경제과 지방행정8급 김 미 란



담당자	담 당	과 장	부군수	군 수	결재일자
		전결			

평 창 군 수 귀하